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h1>보 도 참 고 자 료</h1>	
배 포 일	2018. 5. 21. / (총 6 매)	담당부서	장기이식관리과
과 장	변 호 순	전 화	02-2628-3630
담 당 자	정 영 이		02-2628-3631

질병관리본부, 장기 기증·이식 관리실태 현장점검 5~6월 실시

- 39개 장기이식관련 의료기관 대상으로 뇌사판정·미성년 장기기증, 심장·폐 이식 응급도 절차 등 준수여부 등을 집중 점검 -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장기 적출 및 이식의 적정성 확보를 통한 국민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오는 5월 21일(월)부터 장기이식관련 의료기관 대상으로 하는 실적 평가를 겸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점검대상은 뇌사판정 및 장기 적출·이식 관리, 심장·폐 이식자 응급도 등록, 미성년 장기기증을 신청한 장기이식의료기관 중 총 39개 기관이며,

* 1999. 2. 8. 제정하고 2000. 2. 9. 시행 법률로 장기이식을 합법화하고 뇌사 인정 등

○ 중점 점검항목은 뇌사자 관리 운영·실적, 미성년자 장기 기증·적출 절차 준수여부, 심장·폐 이식자의 응급도 적합성 여부 등이다.

<항목별 집중 점검사항>

구 분	주요 점검사항
뇌사자 관리 운영 및 실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뇌사자 발굴 및 장기 기증·적출·이식, 뇌사판정 절차와 방법, 장기상태 파악, 검사 등 관리 실적 • 뇌사자 관리기관 시설·장비 및 인력의 지정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 • 적합한 이식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기증자 및 이식대기자의 검사용 검체 보관·관리 준수 여부
미성년 장기기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증 적출관련 준수사항 이행실태 등
심장·폐 응급신청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식자의 이식 당시 응급도 및 임상양상 적정성 여부를 점검

○ 특히, 최근 살아있는 미성년자 기증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엄밀한 기준·관리 감독이 요구됨에 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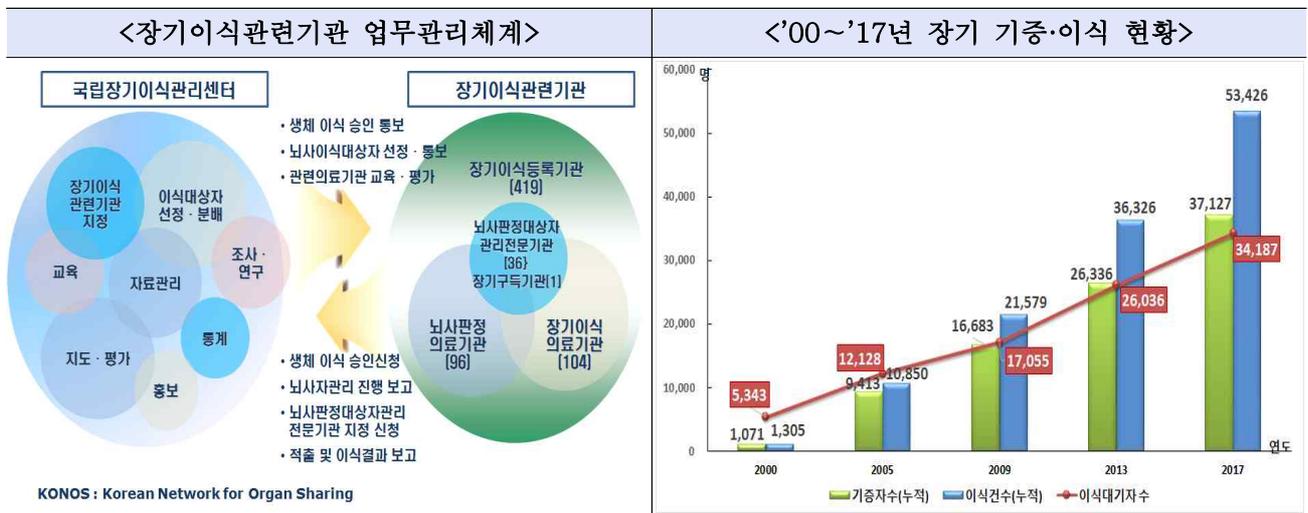
- 미성년 장기기증을 신청한 의료기관 중 상위 30%인 13개 기관은 기증·적출관련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본인여부, 기증자의 건강상태, 수술 후 건강에 미치는 영향, 치료계획 등

□ 정부는 2000년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 후 17여년간 장기 이식이 필요한 대상에게 공평한 기회보장을 위해 전국에 장기이식관련 의료기관 등을 지정하고 업무 네트워크를 구축해

* 2018. 5. 장기이식의료기관(104), 뇌사판정의료기관(96),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기관(36)

○ 37,127명의 기증자를 발굴, 신장·간장·폐·심장 등의 기능이 소실된 환자 53,426명에게 새로운 삶을 살며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장기이식 기회를 제공하였다.



□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과장은 “점점 결과를 장기이식운영위원회*에 상정하고 논의를 거쳐 뇌사자 발굴 실적 등이 우수한 장기이식관련 의료기관을 선정해 9월 개최 예정인 ‘2018년 생명나눔 행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근거한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관한 자문 등

○ 준수사항을 위반한 기관에 대해서는 경중을 가려 지정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및 개선 요구를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참고 1. 장기이식관련 의료기관 현장점검 개요
 2. 장기이식관리체계, 기증·이식현황
 3. 장기이식관련 의료기관 준수사항 등



참고1

장기이식관련 의료기관 현장점검 개요

□ (목적) 장기 적출 및 이식의 적정성 확보를 통한 국민보건 향상

□ 점검 개요

○ (대상기관) 장식이식관련 의료기관 39개 기관

* 전체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36곳), 살아있는 미성년 기증을 신청한 장기이식의료기관(13곳), 심장·폐 응급도 '0' 또는 '1'로 이식받은 장기이식의료기관(17곳)

○ (점검기간) '18. 5. 21.~'18. 6. 29.

○ (점검방법) 뇌사기증자 발굴 및 관리, 장기등 기증자·이식대기자·수혜자의 장기적출·이식 승인신청, 응급도 등록 관련자료 현장 실사

□ 점검 내용

○ (뇌사 기증자 관리) 뇌사자 발굴 및 뇌사 기증자 관리실적, 시설·장비·인력 지정기준 및 준수사항 등 규정 이행여부 확인

○ (미성년 기증자 관리) 기증·적출관련 준수사항 이행실태를 확인

○ (심장·폐 이식자 응급도 관리) 뇌사자로부터 심장 및 폐를 이식받은 수혜자의 이식 당시 응급도가 기준에 적합하게 등록여부 확인

□ 조치계획 및 향후일정

○ 점검 결과를 '장기이식운영위원회 상정·논의

- 우수, 법 위반 장기이식관련 의료기관을 확정, 9월 '2018년 생명나눔 행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여, 위반기관은 행정조치

○ '18년 상반기 실적·점검 등은 하반기 중 실시 예정

참고2

장기이식 관리체계, 기증·이식현황 등

□ 장기이식 관리체계

- 전국을 3권역으로 구분, 장기기증의 발굴·이식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
 - 질병관리본부에 설치된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rean Network for Organ sharing, KONOS)를 중심으로 장기이식의료기관 간 업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긴밀하게 장기 기증·이식 업무 수행

<장기이식관련 의료기관 현황>

(단위: 기관, 2018. 4. 30. 기준)

구 분	장기이식 의료기관	뇌사판정 의료기관	뇌사판정대상자 관리전문기관	장기이식 등록기관
총 계	104	96	36	419
제1권역(서울, 인천, 경기, 강원, 제주)	61	56	21	191
제2권역(광주, 대전, 전라, 충청)	18	16	5	106
제3권역(부산, 대구, 울산, 경상)	25	24	10	122

□ 장기기증·이식 현황

(단위: 명, 건)

연 도	장기이식대기자	장기 기증자수 (뇌사, 생체, 사후 포함)	장기이식건수 (뇌사, 생체, 사후 포함)
2000(2.9~)	5,343	1,071	1,305
2001	6,869	1,536	1,775
2002	8,386	1,558	1,738
2003	9,619	1,598	1,877
2004	10,684	1,723	2,072
2005	12,128	1,657	2,083
2006	13,742	1,775	2,344
2007	15,898	1,736	2,359
2008	17,418	1,886	2,855
2009	17,055	2,143	3,171
2010	18,189	2,179	3,136
2011	21,861	2,497	3,798
2012	22,695	2,555	3,992
2013	26,036	2,422	3,821
2014	24,607	2,476	3,922
2015	27,444	2,567	4,122
2016	30,286	2,865	4,684
2017	34,187	2,883	4,372

주1) 이식대기자는 연도 말 기준 누계임. ('14년 6월 대기자부터 행정자치부의 사망자 자료 적용하여 사망자 제외)



참고3

장기이식관련 의료기관 준수사항 등

□ 뇌사자 관리 관련

○ 준수사항(장기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관련 규정)

- (시설 및 장비) 기증자 및 이식대기자 조직적합성 검사, 검체보관 냉동고, 적출·이식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적정 배치 여부
- (인력) 전담하는 의사, 간호사, 검사책임자 등의 적정 배치 여부
- (주요 준수사항)

- 가. 뇌사판정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뇌사판정대상자의 상태 파악
- 나. 뇌사판정대상자 및 뇌사자의 장기등의 상태를 최적 유지를 위해 전문적으로 관리
- 다. 사람백혈구항원교차검사를 위한 검체를 보관·관리하고 기록을 작성·보관
- 라. 뇌사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람백혈구항원교차검사를 실시
- 마. 이식대상자가 등록된 이식의료기관에 뇌사자의 장기 등을 적출할 수 있는 수술실 제공

○ 벌칙사항

-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뇌사판정대상자의 상태를 파악하지 아니한 경우 및 뇌사판정서 및 회의록 사본 등을 국립장기이식의료기관에 보내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법 제35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0조)
- 법 제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정취소 또는 1년 이내 업무정지(법 제36조)
- 뇌사판정을 받지 아니한 뇌사추정자의 장기 적출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법 제44조)

□ 살아있는 미성년 기증자 관련

○ 준수사항(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8조)

- 본인의 동의와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동의 확인
- 장기 적출 전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장의 승인 사실 확인
- 장기 등 기증자가 살아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본인 여부 확인하고, 본인과 그 가족에게 다음 사항을 충분히 설명할 것
- 가) 장기등기증자의 건강상태
- 나) 장기등 적출수술의 내용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다) 장기등을 적출한 후의 치료계획

라) 그 밖에 장기등기증자가 장기 등의 적출과 관련하여 미리 알아야 할 사항

- 적출·이식 및 장기 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서식에 따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

○ **별척사항**

- 살아있는 16세 이상인 미성년자의 장기등을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이외의 적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적출·이식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와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와 그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동의 및 승인 사실 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심장·폐 이식자 해당 응급도 등록요건 관련**

○ **준수사항(장기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관련 운영지침)**

- (심장) 심장 이식 수혜자가 체외막형 심폐기를 가동 또는 심부전으로 인공호흡 중인 경우 등 응급도 '0', 인공심장 또는 심실 조력장치를 가진 경우 등 응급도 '1' 충족 여부
- (폐) 폐 이식 수혜자가 호흡부전증으로 인공호흡기를 부착 또는 체외막형 심폐기를 가동 중인 경우 응급도 '0', 산소 투여 없이 측정된 동맥혈가스검사 기준값($PaO_2 < 55\text{mmHg}$ 또는 $PCO_2 \geq 55\text{mmHg}$) 등에 부합시 응급도 '1' 충족 여부

○ **별척사항(장기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관련 운영지침)**

- 응급도 등록요건을 위반, 허위로 올린 장기이식의료기관 별척사항
 - 가) 응급도 위반 건당 2개월 간 뇌사자의 심장 또는 폐 미배정
 - 나) 해당기관은 자기 기관에 등록된 심장 또는 폐 이식대기자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타 기관에서 이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
 - 다) 응급도 허위기재가 6회 이상인 경우 1년 동안 해당기관에 뇌사자의 심장 또는 폐 미배정